학교법인 배달학원 정관

제정 : 1990.10.17.

34차 개정 : 2023. 9.15.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고급기술 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배달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라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2017.12.22.)
-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에 둔다. (개정 2013.8.21., 2023.9.15.)
- **제5조(정관변경 등)**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2007.12.5., 2009.1.8., 2013.2.25.)
 -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5.)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5.)
 - ④ 변경된 정관은 '대학알리미'에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5.)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5.)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2017.12.22., 2018.4.27.)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다. (개정 2013.8.21.)
 - ④ 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1)
 -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하하다.
-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2.)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 10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6.9.22., 2010.10.22.)
 - 2. 감 사 : 2인
 -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근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12.5.)(개정 2011.1.27.)
 - ③ 제2항의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신설2007.12.5.)(개정 2011.1.27.)
 - ④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7.12.5.)
-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 사: 4 년
 - 2. 감 사 : 3 년,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 ② (삭제 2014.5.9.)
-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9.1.8.)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간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임원이 법인 및 한라대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합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 3. 임원이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0.12.11.]

- 제17조(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12.11.)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 4. 한라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06.9.22.]

제18조(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 (개정 2009.1.8., 2010.8.25.)

[본조신설 2006.9.22.]

- 제19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 평의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5.]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9.22.)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0.12.11.)
-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 4. 「사립학교법」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 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 6.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 야 하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12.5.)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9.22.)
-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9.22.) (개정 2022.5.20.)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 제21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2.5.20.]

제21조의3(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법인의 임원이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5.20.]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6.5.15.)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질병, 장기출장, 직무집행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말함)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9.)

- ② 이사장이 궐위(자격상실, 사임 등에 따른 퇴임 및 사망을 말함)되는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사장 궐위 시부터 신임 이사장 취임 전까지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9., 2022.5.20.)
- ③ (삭제 2022.5.20.)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 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한라대학교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12.5., 2013.8.21.)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한라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21.)
 -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한라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8.21.)
- 제26의2조(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법인은 법인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라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0.]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7.12.22.)
-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2.)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한라대학교 총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2011.1.27., 2013.8.21., 2017.12.22.)
- 6. 한라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3.8.21.)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6.9.22.)
 -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9.22.)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25.)

-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8.21.)
 -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21.)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고 소집일자, 장소 등을 한라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20.)
-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9.22.)
- 제32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20.12.11.)
 - ②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한다. (신설 2007.12.5.)

제4장 수익사업

- **제33조(수익사업의 종류)** 한라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21.)
 - 1. 임 대 업
 - 2. 조 림 업
 - 3. 농 장 (과수원)
 - 4. 주식투자
- 제34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3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배달농장 및 한라교육연수원을 경영한다.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2.)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8.)

- 제36조의2(해산 시 기록물 제출) 이 법인은 해산인가·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 1. 학적부
 - 2.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본조신설 2020.12.11.]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1.8.)
-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8.)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목개정 2017.12.22.]

- 제39조(임용) ① 한라대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5., 2013.8.21., 2017.12.22.)
 - 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임용과 제1호 각목의 교원에 대한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 제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총장이 따로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6.6.20., 2013.8.21., 2014.8.22., 2014.12.19., 2017.12.22., 2019.8.23)
 - 1. 근무기간 (개정2014.8.22., 2014.12.19.)
 - 가. 교 수 : 정년까지(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수 : 6년)
 - 나. 부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4.12.19.)
 -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4.12.19.)
 - 2.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계약조건은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22., 2014.12.19.)
 -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2014.12.19.)
 - 4. (삭제 2013.2.25.)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2011.1.27., 2013.8.21., 2014.12.19.)

- 1. 교 수 : 정년까지(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수 : 6년)
- 2. 부교수 : 6년
- 3. 조교수 : 3년
- ④ 한라대학교의 부총장 및 교무위원 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2014.12.19., 2017.12.22.)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2006.6.20., 2013.8.21., 2014.12.19., 2017.12.22.)
- ⑥ (삭제 2017.12.22.)
- 제40조(기간제 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2관 신분보장

-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2019.12.6., 2020.12.11.)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13.8.21., 2018.4.27.)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3.8.21.)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 정 2013.8.21.)
 -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3.8.21., 2017.12.22.)
 -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7.12.5., 2013.2.25.)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8.4.27.)
 -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3.8.21.)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07.12.5.)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07.12.5.)
 -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18.4.27.)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 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8.4.27.)
 - 1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때 (신설 2020.12.11.)
-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9.)
-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 6. 제41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09.1.8., 2020.12.11.)
- 6의2. 제41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9.8.23.)
- 7.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5.)
- 8. 제4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5.)
- 9. 제41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5.)
- 10.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23.)
- 11. 제41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9.8.23.)
- 12. 제41조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 ③ 제42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7., 2014.5.9.)
 -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 ② 제41조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6에 따른다. (개정 2011.1.27., 개정2019.8.23., 2020.12.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20.12.11.)

제45조(직위의 해제) ① (삭제 2013.2.25.)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개정 2014.5.9.)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5.)
- 4. 금품비위·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7.12.22.)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3.2.25., 2014.5.9.)
- ⑤ 이사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3.8.21.)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 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 ⑧ (삭제 2018.4.27.)
-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하고,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5.9.)
- 제48조(명예퇴직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전에 자진 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7.12.5.)(개정 2019.12.6.)
 - 1. 대학교 교원 : 20년 이상 근속한 자
 - 2. 법인 및 대학교 직원 : 10년 이상 근속한 자
 -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2.5.)
- 제49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21.)
- **제49조의2(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의 당연퇴직은 「사립학교법」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따른 다. (개정 2017.12.22.)

1~7. (삭제 2017.12.22.)

[본조신설 2013.2.25.]

- 제49조의3(직권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3.2.25.)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개정 2017.12.22.)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개정 2017.12.22.)
-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3.2.25.)
- 제49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비위 정도가 파면·해임·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0.12.11.)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총장은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0.12.11.)
- 제50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하되,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라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21., 2019.8.23.)
-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25., 2017.12.22.)
 - 2. 총장이 부총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21.)
 -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8.21.)
 - 4. 총장이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8.23.)
 -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3.8.21.)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부총장 또는 교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8.21., 2017.12.22.)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8.21.)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한라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21.)
-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59조(교원장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장계위원회는 위원9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7.12.22., 2022.5.20.)
 - ② 교원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및 한라대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2.5.20.)
 - 1. 법인의 이사 또는 한라대학교 교원 (신설 2017.12.22.)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2.)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 **제60조(교원장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장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1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거나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5.20.)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제68조에 따른 수사나 조사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5.20.)

[전문개정 2020.12.11.]

- **제62조(제척 사유)** 교원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3조(위원의 기피 등) ① 정계대상자는 교원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 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 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장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2.)
- **제66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2022.5.20.)
 - ③ 이사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3.8.21.)
 - ④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성희롱 행위 등 성(性)관련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2022.5.20.)
 -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이사장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 ② 관할청이 제1항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2.5.20.)
 - ③ 이사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0.)
 -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여하는 제65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5.20.)
- 제67조(정계 의결시의 정계기준 및 감경기준) 교원정계위원회가 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사립학교 교원 정계 규칙」의 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목개정 2020.12.11.]

- 제68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13.2.25.)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25.)(개정 2017.12.22.)
- 제68조의2(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장계의결의 요구는 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계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3.2.25., 2017.12.22., 2019.8.23., 2022.5.20., 2023.9.15.)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② 제68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2.)
 - ③ 징계위원회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2.25.)
- **제69조(교원장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장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21.)
- 제70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1.)

제3절 직원과 조교

[제목개정 2017.12.22.]

- **제71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12.22.)
 - 1. 제49조의2(당연퇴직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8.21.)
 - 2.~6. (삭제 2013.8.21.)
 - 7. 이 법인과 한라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8.21.)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7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

- 로 정한다. (개정 2017.12.22.)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한라대학교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8.21.)
- 제7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책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3.)
- **제75조(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개정 2014.5.9.)
 - ②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학기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학기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5.9.)
- **제76조(신분보장)**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다.
 - ②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제70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22.5.20.)
- 제77조(장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2., 2018.4.27.)
- **제77조의2(조교)** ①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신설 2017.12.22.)
 - ② 조교는 최초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장이 임용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0.12.11.)
 - ③ 조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한라대학교 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2.)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 **제78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일 반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5.15., 2017.12.22.)
 - ② 법인사무국에는 경리과와 총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5.15., 2017.12.22., 2018.4.2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 제79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총장이 공석인 때에는 처장 이상의 보직교수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9.)

- **제79조의2(학장·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신설 2017.12.22.)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2.22.)
- **제80조(하부조직)** ①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홍보처, 학술정보원을 두며 세부조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5.15., 2013.8.21., 2014.5.9., 2014.8.22., 2015. 12.23., 2017.12.22., 2019.8.23.)
 - ② 본부, 처, 원에 본부장, 처장, 원장을 두며,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5.15., 2013.8.21., 2017.12.2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81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82조(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특수법인 성격의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에 1인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 이사가 된다.
 - ③ 산학협력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83조(정원) (개정 2017.12.22.)

- ① 법인 일반직원 정원은 10인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 ②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은 56인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제8장 대학평의원회

[본장신설 2006.9.22.]

- 제84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5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5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1., 2018.4.27., 2020.5.8., 2020.12.11., 2022.5.20.)
 - 1. 교원 : 4인
 - 2. 직원 : 2인
 - 3. 조교 : 1인
 - 4. 학생 : 4인
 -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4인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6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회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③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조교 중에서 최다수 인원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2.11.)
- ④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20.12.11.)
- ⑤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1.)

제87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단,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5.20.)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88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9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7.12.5., 2013.8.21.)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8.21.)

제90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21.)

제9장 보칙

- 제9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 경제신문에 공고한다.
- 제9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정 인 영	20.05.06	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256 2/5
이 사	정 몽 원	55.08.04	"	서울 용산구 한남동 1-384 유엔빌리지 154
"	정 몽 국	53.10.02	"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455 현대빌라 2-201
"	계 봉 혁	25.09.25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10-802
"	변 무 관	22.12.27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9-16
"	최종명	38.06.17	2년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48-1 덕수연립 나-105
"	김 한 원	50.02.2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2상록마을 319-1602호
"	장 윤	27.07.22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대성현대아파트 101-1306호

"	김 익 래	44.06.23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6-14 럭스맨션 B-301
감 사	문 정 식	55.03.17	2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 22/2 우성아파트 109-1105호
"	박 찬 수	43.12.30	1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505-1208호

제94조(청렴의무) 이 법인의 임직원 및 한라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5.20.]

- **제95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94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26.)
 - ② 행동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6.)
 -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이 법인 또는 한라대학교 총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4.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법인 임직원 및 한라대학교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5.20.]

부 칙 (전행 25423-432)

이 정관은 199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행 25422-340)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행 81410-428)

이 정관은 199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행 81422-974)

이 정관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1-380)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16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라공업전문대학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한라공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한라공업전문대학은 2000년 2월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한라공과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4조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한라공업 전문대학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의무는 한라공과대학교가 이를 승계한다.

부 칙 (대학 81422-1514)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5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라공과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라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행81422-4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 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칙(대학 81422-161) 중 "한라공업전문대학은 2000년 2월말까지"를 "한라공업전문대학은 2004년 2월말까지"로 변경한다.

부 칙 (대재 81422-1403)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재 81422-462)

이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학지원과-1447)

이 정관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2893)

이 정관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356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54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5484)

이 정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 다.

부 칙 (대학경영지원과-147)

이 정관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4917)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6121)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630)

이 정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2-90)

이 정관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3-38)

이 정관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4-26)

이 정관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4-54)

이 정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4-113)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5-72)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7-9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변경)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의 정관 및 규정과 대학교의 제규정에서 교원 과 직원의 '임면'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개정 규정에 의한 '임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은 개정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 직군명 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의 변경)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의 정관 및 규정과 대학교의 제규정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일반직'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개정 규정에의한 '사무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배달18-19)

이 정관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9-80)

이 정관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19-125)

이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20-34)

이 정관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달20-1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9월25일 이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17.12.22.) <별표 2>(삭제 2017.12.22.)